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2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보복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법안 서명

법안(S.4394-A/A.5144-A), 불법 또는 위험한 기업 활동의 보고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 행위로부터 직원과 전직 직원 보호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기업 활동을 신고할 경우 고용주의 보복 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덜 보호받지 못했던 민간 부문 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직원의 정의는 전직 직원까지 확대되어, 고용 후 보복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은 보복행위의 정의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는데, 이제 이전 직원의 현재 또는 미래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행동이나 협박, 이민당국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협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전직 직원이 추가되면서 보복 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시효도 2년으로 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경제 회복 노력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직원들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사업 관행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어떤 근로자도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직장내 보복을 방지함으로써 직장에서 일하는 뉴욕 시민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직원은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직원들이 법 위반 사실이 있거나 실질적이거나 특정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생성하고 제시한 실제 법률 위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전에 보호되는 내부 고발 유형을 확대했습니다. 이 법안은 직원 보호를 최우선시하며, 그들이 생계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Jessica Ramo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직장에서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나섰을 때, 그들은 그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딘다고 해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안도감을 가져야 합니다. 법안 S.4394A는 공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내부고발자 보호 기능을

독립적인 계약자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근로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근로자들의 경험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을 잘못 분류하려는 성가신 국가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습니다. Hochul 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뒤에 있으며, 그들의 건강과 존엄, 그리고 직장에서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Michael Benedetto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뉴욕 근로자들에게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은 보복당할 두려움 없이 그들이 보고 있거나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하는 잘못된 행동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